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「증권거래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3. ~ 3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정경제부령 제 호

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정기
증권거래세 과세표준]수정 신고서
[기한 후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관리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	---------

[] 과 세 기 간 년 월 양도분 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)
[] 과 세 기 간 년 반기 양도분 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)

① 납세의무자 (신 고 자)	법 인 명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	성 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 소(소재지)	

②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						③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
① 과 세 표 준						
② 세 율	합계	35/10,000	20/10,000	10/10,000	5/10,000	15/10,000
③ 산 출 세 액						
④ 감 면 세 액						
⑤ 조 정 환 급 액						
⑥ 차 감 세 액 (③-④-⑤)						
가 산 세	무(과소)신고					
	납부지연					
	⑦가산세계					
⑧ 납 부 할 액 (⑥+⑦)						
⑨ 일괄납부 금액						
④ 비 과 세 양 도 내 역	종목 수		양도가액 합계			
국 가/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						
주 권 매 출 분						
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						

「증권거래세법」 제10조제1항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제4항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:		(서명 또는 인)	세무대리인:		(서명 또는 인)
⑤세무대리인	성 명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
	관 리 번 호		생 년 월 일	전 화 번 호	

세 무 서 장 귀하

구비서류	1.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1부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)
	2.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)
	3. 조정환급명세서 1부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)
	4.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)
	5.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)
	6.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)
	7.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0호서식) 1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성방법

-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 - *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,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.
-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. 납세의무자가 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.
-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 - *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5/10,000, 코스닥시장 또는 K-OTC 증권거래세 20/10,000,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0/10,000, 기타 증권거래세 35/10,000, 농어촌특별세 15/10,000
-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④ 감면세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,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에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.
-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·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-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⑨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에탁결제원만 적습니다.
- ⑩ ④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,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⑪ ⑤ 세무대리인란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관리번호,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 및 생년월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.
 - 가. 관리번호: 「세무사법」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 - 나. 생년월일: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(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)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